

알림

2009년호 겨울호 통권 48호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문화』는 특집으로 ‘조선 유학자들의 유가 경전 이해’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논문들은 2009년 4월 9-10일 國立臺灣大學人文社會高等研究院 주최 韓國儒學與經典詮釋 국제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이미 통권 47호에서 일부를 수록한 바 있습니다.

원고 작성 지침

1. 본문의 체제

- 1) 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장, 절, 항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 항은(1)로 표기한다.
- 3) 인명에서 존칭은 생략한다.

2. 인용문

- 1)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 2)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 3) 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의 번호와 제목을 달고, 그 전거를 표 아래에 밝힌다.

3. 각주(논문 인용 방법)

- 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저서의 경우 : 저자명, 간행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인용면수.
논문의 경우 : 필자명, 게재연도,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인용면수.
저서명, 논문제목 등은 반드시 원래의 제명(제목) 그대로 기재한다.
국어학 논문의 경우는 저자(필자)명, 간행(게재)연도, 인용면수만 기재하고,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서 밝힐 수 있다.
- 2)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겹낫표(『』)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낫표(「」)로 표시한다. 구미 문헌의 경우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3) 면수는 마지막 서지 사항 뒤에 쉼표를 찍고 이어서 쓰되, 여러 면을 인용할 경우에는 시작하는 면수와 끝나는 면수 사이에 줄표(-)를 쓴다. 면수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研究』, 한국출판사, 43-45면.
許均, 1994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 『韓國文化』11, 43-45면.
R. Tylor, 1993 “The Korean Science”, *Seoul Journal* 10, p.10.
(국어학의 경우)

허균(1989:35) 참조.

- 4) 재수록, 재인용의 경우에는 ()안에 넣는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 『韓國文化』10(『洪吉童研究』, 한국출판사, 22면에 재수록).

R. Tylor, 1993 “The Korean Science”, *World science and civilization* Vol. 2, pp. 19-20(김영한, 1997 『미래의 과학』, 과학출판사, 35면에서 재인용).

- 5) 편저나 번역서의 경우에는 ()에서 처리한다

보기: 박지원, 1994 『閔翁의 생애와 사상』 『韓國의 인물』(金萬重 편), 한국출판사, 32-43면
로버트 테일러(김영한 옮김), 1997 『韓國의 과학(상)』, 과학출판사, 235면.

- 6) 여러 개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 『韓國文化』10 ; 1997 『洪吉童과 울도국 건설』 『洪吉童研究』, 한국출판사.

- 7)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 국문의 경우 ‘위의 논문(책)’으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에는 *Ibid.*로 표기한다.

보기 : 위의 논문, 102면.

Ibid., p.205.

- 8)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 국문의 경우: 홍길동, 앞의 논문(책), 203면.

영문의 경우: R. Tylor, *op.cit.*, p.205.

- 9)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를 쓰고 부제를 적어준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의 사상: 유토피야 건설사상을 중심으로』 『韓國文化』10, 23-25면

4. 각주(사료인용방법)

- 1) 출전이나 전거를 밝힐 경우에는 원제목대로 한다. 영인본 인용시에는 최초 인용시 영인처를 밝혀준다.

보기: 元曉, 『金剛三昧經論』권4, (한국문화사 영인본 102면).

- 2) 실록 등 원자료의 편차와 기사항목을 밝히고 수록된 글은 그 제목을 제시한다. 자료명은 『』으로, 원전 안의 기사인 경우에는 「」으로 표시한다.

보기: 『高麗史』권84, 刑法1 公式 相避

『太宗實錄』권10, 태종 2년 5월 辛亥.

『栗谷集』권8, 「萬言封事」

- 3) 원사료를 함께 밝힐 경우에는 인용문은 띄어쓰기를 하고 “ ”로 묶어준다.

보기: 『고려사』권77, 百官2 西班 左右衛 割註 “中郎將以下 皆有攝 並各品之從”

4) 번역본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임을 밝힌다.

보기: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5』, 190면.

5) 자료집의 경우에는 편자, 발간년도, 서명, 자료제목, 면수의 순으로 한다.

보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84 『古文書集成』1, 「分財記」221면.

5. 기타

1)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원고 말미에 반드시 영문제목과 필자 성명의 로마자표기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2) 필자의 소속, 직위 등도 제출 원고의 말미에 기입한다.

3)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논문의 뒤에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4) 단, 국어학 논문의 경우에는 참고문헌을 달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李熙昇(1955),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홍길동(1980), 『中世國語의 母音調和 研究』, 박사학위 논문(서울대 대학원).

李崇寧(1960),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國語學』20.

Chomsky,N.(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per and Row.

Greenberg,J.H.(1966), “Rethinking linguistics diachronically,” *Language* 55.

간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 4조 3-4항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韓國文化』(이하 학술지라고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회수)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4회 간행한다.

제3조(게재 논문의 내용과 종류)

- ① 한국학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게재 논문의 종류에는 ①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동향 소개, 서평 등이 포함된다.
- ③ 기타 연구원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논문 투고)

- ① 학술지 간행 3개월 이전에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간행일 1개월 이전까지 심사 및 그에 따른 수정이 완료된 원고를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다.
-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을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편집부위원장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 4조 2항이 규정하는 편집간행부장이 겸임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구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 4조 2항이 정하는 교육학술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을 겸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구자로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 ⑦ 편집위원회에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⑧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논문심사)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2차 심사는 별도로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 ② 논문게재여부는 2차에 걸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可否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약함)의 학술지인 『韓國文化』(이하 학술지로 약함)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③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연구원의 학술 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
-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 ④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의 2차 심사 여부
- ⑤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2차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1차 심사위원이 2차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제6조 2차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 ① 논지의 명료성과 논리성
- ②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
- ③ 학계 기여도
- ④ 형식의 적절성 및 표현의 정확성
-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 ⑥ 학위논문의 일부분을 전재했는 지의 여부

제7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① A·A·A / A·A·B : 게재
- ② A·B·B / B·B·B / B·B·C : 수정 후 게재
- ③ B·C·C / C·C·C / C·C·D : 수정 후 재심사
- ④ C·D·D / D·D·D : 게재불가
- ⑤ 위의 각호 이외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9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문화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新稿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기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문화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핵심적인 내용이 한국문화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자기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
3. 기타 중복게재 또는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논문.
4.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겹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겹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1.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문화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한국문화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6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장 이의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중복게재,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원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투 고 안 내

1. 투고 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논문, 연구 동향 소개, 서평 등이 포함된다. 단, 학위 논문의 일부분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투고 요령

- ① 제출하는 원고는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우송시 봉투에는 <한국문화 원고>, 원고 표지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 ③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hangukmuwha@gmail.com)

3. 원고작성 요령

- ① 원고 분량은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로 하며, 연구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원고는 **한글 97** 이상의 프로그램 또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③ 원고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고,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요령은 『韓國文化』 원고작성지침을 참조한다.
- ⑤ 원고말미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 영문제목과 필자 성명의 로마자표기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4. 원고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 ① 매호 간행 3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 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②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180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과 5개 이상의 국영문 주제를 제출해야 한다.

5. 저작권 규정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원이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기타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간행된 『韓國文化』 2부와 별쇄 20부를 필자에게 증정한다.

② 문의 및 연락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편집위원회 ☎151-742

전화 : (02) 880-2647

전자우편 : hangukmunhwa@gmail.com

編輯委員長

金仁杰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編輯副委員長 겸 編輯人

李鍾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집간행부장)

編輯委員

姜寬植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金倉燮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盧明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文重亮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당연직위원)
宋惠眞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부교수)	JiWon Shin (UC Berkeley Assistant Professor)
小倉紀藏 (교토대학교 인문환경학연구과 준교수)	玉泳晟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조교수)
殷棋洙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부교수)	田鳳熙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鄭肯植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許南進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編輯員

李光烈

韓國文化 48

© 200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年 12月 30日 發行

編輯人 李 鍾 默

發 行 書 大 學 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印 刷 三 進 印 刷 公 社

TEL 736-9595~6

書 大 學 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서울特別市 冠岳區 新林洞 山 56-1

☎ 51-742

TEL : 880-2647 FAX : 883-3305

E-mail : hangukmunhwa@gmail.com

Home-Page : <http://kyu.snu.ac.kr>